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수요기관이 집행하는 조달물자의 구매("제조 및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대한적십자사 통영병원을 말한다.
2.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제2호의 검사에 활용한다.
4. "검수"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조달물자"란 수요물자를 말하고, 수요물자는 수요기관의 조달요청에 따라 계약·공급하는 물자로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구매하는 물자를 말한다.
6. "협정물자"란 수요물자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물자 및 용역을 말한다.
7.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이란「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2조(「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하며, 물품구매의 제작 감독, 도면 승인,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시험, 검수,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수요기관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계약담당자)으로 본다.
8. "조사담당공무원"이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 받은 자, 제7호의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한다.
9.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이행보증증권)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이 특별한 통보를 하지 않는 이상,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5조(계약의 연장) 제4조에 의한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연장된 계약의 제반 계약조건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상대방은 연장된 계약기간의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주 단위 납품이 가능하여야 하며, 매주 발주되는 수량을 차질 없이 납품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납품되는 물품은 수요기관의 검수를 받고 납품완료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검수 시 물품의 하자 등이 발견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규격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확정된 계약품목에 대한 규격사항(제조사 포함)을 엄격히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규격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야 한다. 계약상대방은 계약체결일 이후 계약품목, 단가의 착오를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제8조(대체제 납품) 계약상대자가 발주물품을 확보하지 못하여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수요기관은 대체물품으로의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내 납품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요기관은 다른 판매처를 통해 대체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제9조(제품의 품질 및 규격변경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규격 및 기준 등이 관련부처의 법규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계약규격변경 등 제반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한다.
-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또는 발주기관의 책임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그 밖의 지체상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에 따른다.

제11조(대가지급) ① 납품된 물품의 결제는 납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후 지급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대가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의2(계약채권 양도제한 특약) ① 수요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미확정 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급여 상한금액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계약체결 당시 계약단가가 급여 상한금액을 초과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급여 상한금액을 계약단가로 한다.

- ② 계약기간 중 급여 상한금액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단가가 급여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상한금액을 계약단가로 한다.
- ③ 제2항의 상황이 발생하였음에 불구하고 물품이 입고된 경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정산한다.

제13조(단가계약) ① 단가계약에 대한 납품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발주서에 따른다.

-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수요기관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내 금액을 계약금액에 초과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기한 이전이더라도 수요기관으로부터 분할 납품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수요기관에서 납품요구 수량의 취소 또는 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⑥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규격이 변경되거나 수량이 증량되어 수정 납품요구된 경우 그 규격변경 및 증량분에 대하여는 수정납품요구시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

제14조(납품방법)

- ① 본 물품은 '병원'의 발주에 의해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일로부터 5일 이내에 통영직십자병원 각 수요부서(중앙공급실, 수술실, 물리치료실, 내시경실)에 납품하여야 한다.
- ② 납품은 직접 배송을 원칙으로 하나, 거리 또는 납품 특성에 의해 병원과 협의하여 물류(택배)를 통한 납품을 할 수 있다. 이때 발주한 물품이 각 수요부서에 차질 없이 입고되어야 하며, 수요부서별로 직접 인도되지 않은 건(택배 사의 인도장소 외 하차 등)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이 부여될 수 있다.
- ③ 납품시간은 통상적으로 병원 근무시간으로 하고, 이 때 포장 및 운송비 등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운송 시 물품 성능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인수도 과정에서 발견된 파손품, 오손품, 단량 부족품은 인수된 물량에서 제외하며 제외된 물량은 계약상대

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즉시 반송하고 동 물량을 대체 납품해야 한다.

- ⑤ 병원의 사정에 의해 물량이 증가 또는 감소될 수 있으며, 감염병 유행, 긴급한 수술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병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우선으로 의료소모품을 납품해야 한다.

제15조(포장)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물품의 포장을 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골판지 상자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평철사 대신 강력접착제로 접합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단위당 포장이 필요하여 소단위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풀, 종이테이프, 강력접착제 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제16조(재판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요기관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2.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를 거부하거나 장기간(30일) 납품하지 못한 때
3. 계약품목과 다른 의료소모품을 공급하거나, 납품된 물품이 요청 물품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수요기관이 반품·교환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
4. 지체상금이 발생하여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에 상당한 때

제18조(입찰 공동행위 방지)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공고를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공고 입찰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9조(특허권 침해분쟁 등)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침해분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0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특례 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례 규정」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2. 입찰공고문
3.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22조(물품의 타소보관) 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조물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때에는 인수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보관(이하 "타소 보관"이라 한다) 관리하게 하고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행하며, 타소 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를 수요기관으로 하고 보험기간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 중 발생하는 분실·훼손에 대한 책임 및 수요기관에서 인도조건대로 인수할 때까지 계약규격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지방계약법시행령 제75조)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수요기관에서 인도받고자 할 경우 인도조건대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하고 조달청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